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’ 의 부당사용 등 방지를
위한 고발 근거 신설 및 과태료 금액 상향〉

■ 박은정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4544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 은 호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3

I. 개요

1.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4544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박은정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5. 11. 25.

(3) 회 부 일 : 2025. 11. 26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장애인복지법」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‘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’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(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)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. 한편,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·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전국, 2021년 1,348건에서 2024년 7,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,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.2억원에서 약 101.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.

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·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

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, 「형법」 제225조 ‘공문서등의 위조·변조’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·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위·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,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(안 제39조제4항 신설), 위·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,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(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).

Ⅱ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□ 개정안은 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’의 대여·양도·부당사용 및 유사 표지·명칭 사용 금지규정 위반 시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39조제4항 신설),

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(제90조제2항제1호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</u>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④ (생략) 제90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<u>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</u>	제9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-----</u> 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1. (생략)

3. ~ 7. (생략)

④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- 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’는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 이용 차량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하는 표지로,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’ 여부도 함께 표기함.¹⁾

<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예시>

기능의 구분			운 전 자		비 고
			본인	보호자	
기 본 A형	보행장애	유			
		무			

자료: 「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」

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(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)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.

- 이와 관련, 현행법에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 표지를 대여·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, 유사한 표지·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보건복지부 지침은 「형법」상 공문서 위·변조 및 행사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·명칭 등을 사용한 자

「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」

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

4-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

8 벌칙 및 과태료 부과

가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,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,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- 다만,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.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적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한다.(단, 과태료 재판에 따른 부과권한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)

나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2의4](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)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, 「형법」상 공문조 위·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

- 개정안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의 부당 사용이나 유사 표지 사용 금지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,

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(과태료 300만원 이하 →500만원 이하)함으로써,

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이용질서 확립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,²⁾

유사 표지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「형법」 제225조³⁾에 따른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재규정만으로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

개정안에 따른 고발 근거 신설 및 과태료 상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<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무단 사용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>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과태료 부과(건)	4,366	1,479	2,537	6,690	7,897
부과금액	약 28억원	약 20억원	약 34억원	약 98억원	약 123억원

자료: 보건복지부

3.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

- 2) 참고로,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등록증 및 모바일 등록증을 양도·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·표지를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④ 등록증(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,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(이하 “복사본등”이라 한다)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지를 사용한 자

2의2.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

- 3) 「형법」 제225조(공문서등의 위조·변조)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가. 보건복지부

- 현행법에 따른 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’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’는 하나의 표지로 운영되고 있음.

따라서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(20만원) 및 주차방해 과태료(100만원)와 비교했을 때 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금액(300만원)이 현저히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, 개정안과 같은 과태료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- 또한,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재도 지침 등에 의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02